
Policy and Law Report _Vol.188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3.5.29.~6.4.) -

June 5, 2023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5. 지난 주(5/29~6/4)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요 뉴스레터 List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기획재정부	• 업종규제 완화, 민간자금 중심 벤처투자 등 세계 최고 첨단산업 글로벌 협력지구 (클러스터) 조성 방안 발표 - 세제지원 대상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핵심기술 추가 - 기업, 연구소와 법률, 회계, 금융, 창업보육 기관 집적 - 국가 바이오 위탁생산(파운드리) 구축 등 디지털 바이오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 보건의료데이터 개방 확대 및 중개 플랫폼 신설 대통령은 첨단산업 글로벌 협력지구(이하 클러스터) 전략회의(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여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논의함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클러스터에 대한 접근방식을 유망 클러스터를 선별하여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함 이를 위해, 클러스터 내에 기업, 대학, 연구기관, 법률·회계 등 사업지원서비스 기업, 창업보육기관이 집적될 수 있도록 입주업종규제 등을 완화하고, 정책금융에 의존해온 벤처투자에 민간자금이 흘러가도록 벤처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임 또한, 우리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등 세계 최고수준 연구기관과의 연구개발(R&D) 분야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 글로벌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 주요 내용으로는 ① 규제 완화를 통해 클러스터 구성원 밀집 배치 촉진 - 용도변경, 클러스터 개발·관리계획 개정 등을 통해 기업·대학·연구소·사업지원서비스(법률·회계 등) 기업 등 집적 추진 * 스타트업이 클러스터 입주 법률·회계·컨설팅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등 지원 ② 수요 맞춤형 네트워킹 활성화 -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창업자, 창업보육기관, VC, AC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 신설 ③ 앵커기업·스타트업 협력으로 개방형 혁신 활성화 - 클러스터 내 앵커기업-스타트업간 협력시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선정 우대, 클러스터 전용 TIPS 프로그램 운영 등 개방형 혁신 촉진 ④ 원천·상용화 기술 R&D 활성화 및 기술사업화 촉진 - MIT 등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R&D 협력을 추진하고, 클러스터 내 산·학·연 협력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 ⑤ 성과물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 - 유망 벤처기업 선별 체계 확립, 스케일업 지원 및 M&A 활성화* 등을 통해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 세액공제 대상 기술가치금액 범위 확대	2023-06-01

부처	내용	일시
	⑥ 우수 기업·인재 유치 - 첨단 클러스터 입주 외투기업에 현금지원 확대 및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세제*·비자 인센티브 제공 * 해외 우수인재가 국내 클러스터 내 대학교수로 임용시에도 세액감면 적용 ⑦ 지자체·민간 주도로 클러스터 계획 단계부터 집적 추진, 지자체 유희부지를 활용하여 기업·대학 등 적극 유치 ⑧ 지자체, 지역금융기관, 지역기업 등이 공동 출자하는 클러스터별 특화펀드를 신규·확대 조성하여 유망기업에 집중 투자 ⑨ 일자리연계형 주택(LH) 공급 확대, 기숙사 신축, 상업·문화시설 확충 및 교통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 클러스터 내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DRT) 도입 -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23.下) < 바이오 분야 클러스터 육성·활성화 방안 > 주요 내용으로는 ① 디지털바이오 인프라 조성 -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예: 동물세포 배양·정제기술 등) 포함 - 디지털바이오 7대 R&D 선도프로젝트* 추진 * (예) 차세대 신약을 신속하게 설계하는 '항체설계 AI', 희귀질환암 등을 유전자검사를 통해 예측·관리하는 '닥터앤서 3.0' 프로젝트 등 - 혁신적 바이오의약품의 R&D - 임상 - 수출 - M&A 등 전주기에 투자할 수 있는 메가펀드 1조원 조성(~'25) - 디지털바이오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Boston-Korea 프로젝트* 추진 * 국내 우수 연구기관과 보스턴의 선도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통해 기술개발·인력양성 ②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 - 국가재정 투입 데이터의 개방·공유 의무화, 건강보험 데이터의 민간기업 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 개정 및 데이터 개방('23.下) - 민간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 데이터의 표준화 촉진을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 신설 - 보건의료데이터 수요·공급을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 구축 * 보건의료데이터 민감성을 감안하여, 공공기관(보건의료정보원)이 데이터 탐색·매칭·분석 지원, 가명처리 적정성 등 모니터링 - 공공기관* 및 민간병원**의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 마이데이터 도입,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병원→보험사, '23년 「보험업법」개정) * 건강검진정보(건보), 예방접종이력(질병청) 등 구체적 도입범위 검토('23.7월~, 행안부 고시) ** 검사결과(혈당, 심전도 등), 진료기록, 영상·사진(X-ray, CT, MRI 등) 등 단계적 확대('24~, 개보법 시행령) -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 허용 범위 지속 확대*, 가명처리가 가능한 유전체 정보 범위 확대** * (현행) 웰니스 → (개선) 실증특례 등을 통해 검증된 주요 질병 항목 추가 검토 ** (현행) 널리 알려진 질병에 관한 유전자 변이 정보, 종양의 신규변이 정보 등 2종에 한정 → (개선) '종양의 일부 유전자 서열정보' 등 데이터 활용 수요가 많은 항목 추가 검토 -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절차 간소화* * 데이터심의위원회(DRB) 심의 통과시, 'DRB 승인서' 및 '데이터활용계획서' 만으로 7일 이내 'IRB 심의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는 신속절차 신설 ('IRB 관리안내 지침' 개정)	

부처	내용	일시
산업통상 자원부	•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절차 착수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3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최초 공개함. 이 개정안은 기술유출의 지능화, 다양화 등에 대응하여 우리 산업기술보호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규제할 것은 확실히 규제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는 원칙하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의약품 해외인허가 및 해외자회사와의 공동연구에 대한 기술수출 시 연간 포괄심사 절차 도입, 특허소송 대응 관련 신속처리 방안도 발표함 이를 통해 기술유출우려가 적은 경우 기업의 수출과 연구개발을 최대한 지원하고, 기업의 기술수출 관련 애로는 개선하고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음 주요 내용으로는 ① 국내소재 외국계 사모펀드에 의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인수합병 심사 신설 ②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판정신청 명령제 및 보유기업 등록제 운영 신설 ③ 기술유출 시 숨방망이 처벌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온 범죄 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변경	2023-05-30
보건 복지부	•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 안전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혁신 기반 마련 -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펀드 조성,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보건복지부는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를 보고함 디지털 헬스케어는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맞춤형 헬스케어 수요의 증가에 따라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데이터 기술 발달에 기반하여 전 세계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음 * 세계시장 규모 : (’20) 1,525억 달러 → (’27) 5,088억 달러(연평균 성장률 18.8%) (GIA) 우리나라는 전 국민 건강보험 체계,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도입률 93.9% 등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공공데이터 개방과 표준화된 의료데이터가 부족하며, 공급자 중심의 데이터 정책 등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보건의료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임	2023-06-01

부처	내용	일시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 구축 및 개방 활성화 추진 - 양질의 바이오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한 정밀의료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100만 명 규모의 임상·유전체 정보를 수집·구축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사업 추진 - 하반기부터 중환자 특화 빅데이터 사업 등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연구개발(R&D) 과제와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으로 수집·생산되는 데이터에 대해 개방·공유를 의무화하고, 건강보험 데이터의 안전한 개방·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 개정도 추진 - 데이터 안심구역과 원격분석 지원시스템을 확대*하고 다양한 분석도구(STATA, 파이썬 등)를 도입하는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의료 데이터 활용환경 개선 * (데이터 안심구역) ^(현재) 건보공단·심평원 분석센터 및 안심활용센터 31개소 → ⁽²⁴⁾33개소 (원격분석 지원시스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원격분석 지원 시스템 구축 ② 민간의 자발적인 데이터 개방·활용 환경 조성 - 민간병원별로 각자 구축한 전자의무기록(EMR) 데이터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해,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추진 -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핵심 기반인 연구목적의 보건의료 데이터 공유와 활용을 지원하는 ‘보건의료 특화 데이터 중개플랫폼’ 신설 -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 검사역량 인증제 허용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가명처리가 가능한 유전체 정보 범위를 데이터의 민감성과 연구 수요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관련 연구 및 정밀의료 산업 활성화 지원 * Direct-To-Consumer,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타액 샘플을 채취하여 유전자 검사업체에 검사를 신청하고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 ③ 규제 완화 등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인프라 개선 추진 - 데이터심의위원회(DRB, Data Review Board), 생명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이중 심의절차를 간소화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의 데이터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고, 이를 활용한 연구개발, 사업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령** *해당 법령안을 클릭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행정 안전부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5.30. 시행) 종전에는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경영하는 모든 대중골프장의 운동시설용 토지에 대해 별도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운영하였으나, 앞으로는 비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대중형 골프장의 운동시설용 토지에 대해서만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운영함으로써 국민체육진흥과 골프대중화 정책 추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제101조제3항제9호)	2023-05-30
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3.5.31. 시행. 다만, 제50조제2항제2호 및 제51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한국환경보전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부분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 예정) 종전에는 폐목재의 분류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폐기물 처리 실적 보고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총 14종의 분류 체계를 앞으로는 총 7종으로 간소화하고, 폐운할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을 추가하면서 그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며,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최초 교육시기와 교육주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소각시설 등의 기술관리인 자격기준으로 에너지관리기사를 추가하는 한편,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종전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그 중 무거운 기준에 따르되 행정처분 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도록 하고, 위반횟수별 행정처분의 가중처분과 관련하여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의 계산방법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33조제1항제7호, 제50조제1항, 제50조제1항제1호, 제50조제1항제2호, 제50조제2항 신설, 제51조제2항 등)	2023-05-31
공정거래 위원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1.1. 시행 예정)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등이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내부거래를 할 때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하는 공시 대상 대규모내부거래의 기준금액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대규모내부거래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공시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규모에 맞는 대규모내부거래를 중심으로 시장의 자율적인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33조제1항, 제36조제1항)	2023-05-30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산업통상 자원부	• 「에너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안부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에너지 관련 위원회 통합을 위한 법률안의 국회 의결에 대비하고, 에너지전문위원회 구성을 현재의 산업부 에너지정책실 직제에 맞게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도모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에너지전문위원회 구성 중 “에너지개발전문위원회”와 “에너지산업전문위원회”를 “자원산업전문위원회”로 통합하고, “전력정책전문위원회” 및 “신·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를 각각 신설하여 운영 (안 제4조제1항) - 위원회 통합 법률안 개정시 현행 “전력정책심의회” 및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가 폐지되고 동 위원회의 심의내용을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으로, 에너지위원회 안건의 심도 있는 사전 검토를 위해 해당 분야의 에너지전문위원회를 신설 - 불필요한 위원회의 남설을 방지하기 위해 기능이 유사한 “에너지개발전문위원회”와 “에너지산업전문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집중도 제고 ※ 의견 제시기간 : 2023/6/1(목)~7/12(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정책과)로 제출	2023-06-01
국토 교통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 제작기술이 빠르게 발전되고 있고,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더라도 다소 과도한 검사주기를 적용하고 있는 일부 차종과 동일한 차종이면서 검사주기가 상이한 대형 승합차에 대한 검사주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해외 주요국 대비 강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경형 및 소형 승합차와 비사업용 경형 및 소형 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를 각각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사업용 경형 및 소형 화물차의 최초검사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 (안 제74조 별표 15의2) ② 승차 정원 등이 승용자동차와 비슷한 형태의 중형 승합차 중에서 일부 차종에 대해 최초검사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 (안 제74조 별표 15의2) ③ 사업용 대형 승합차 대비 강화된 검사주기를 적용하고 있는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에 대해 당초 차령 5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주기를 차령 8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를 받는 것으로 완화 (안 제74조 별표 15의2)	2023-05-30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의견 제시기간 : 2023/5/30(월)~7/10(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로 제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천재지변, 화재, 침수 등으로 인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 검사를 명하도록 하여 차량 관리를 강화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였음 이에, 법 개정안에서 위임하는 천재지변·화재 또는 침수로 인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천재지변, 화재, 침수 등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안 제63조 제4항 신설) ※ 의견 제시기간 : 2023/6/2(금)~6/14(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로 제출	2023-06-02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 「<u>디지털시장의 공정거래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u>」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가상현실(VR), 블록 체인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온라인플랫폼 등을 활용한 디지털 시장도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서 디지털 시장과 연관된 국내 산업을 제대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 특히 디지털 시장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는 디지털 플랫폼서비스를 통하여 개인정보 및 활동정보, 개인 또는 기업의 창작물 등을 축적·결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공공적인 성격을 지닌 자산으로 규정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데이터의 공공적 가치를 활용해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과 창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단 지적임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영위하는 일부 지배적 플랫폼 기업들을 위주로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구축하면서 승자독식의 독과점 시장이 형성된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음. 또한 시장지배적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자신의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자사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우대 등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행위 및 데이터 독점으로 인해 디지털 플랫폼 시장 전반에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우려가 증대되는 만큼 이에 대한 견제적 규정도 동시에 요구되고 있음 이 같은 디지털 플랫폼서비스 사업자의 독점행위가 새로운 플랫폼의 탄생을 저해하는 등 혁신을 막거나,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나아가 언론 기능의 훼손 및 개인정보 침해 등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의 제정 및 디지털 플랫폼 시장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제기됨 이에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정의하고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사항 및 경쟁촉진을 위한 규율들을 규정하는 동시에 시장혁신을 위한 기금 마련 등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시장이 독과점에 빠지지 않고 지속적인 혁신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디지털시장에서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함과 아울러 디지털시장의 혁신 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디지털시장의 공정성, 창의성 및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며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② 디지털시장이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디지털 플랫폼서비스가 거래되거나 디지털 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함 (안 제2조)	2023-05-30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디지털 플랫폼서비스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함 (안 제5조) ④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사업자는 직접 또는 그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자신의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의 이용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에서 제한하는 기업결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안 제9조) ⑤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사업자는 자신의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이용자의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사업을 하거나 이용자가 사업자인 경우 그 사업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여서는 아니 됨 (안 제10조) ⑥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사업자로 부터 분리된 계열회사의 경영에 개입하거나 그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사업자로 부터 분리된 계열회사와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안 제11조) ⑦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차별적 취급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안 됨 (안 제12조) ⑧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안 제13조) ⑨ 디지털시장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디지털시장혁신재단을 설립함 (안 제16조) ⑩ 디지털시장의 혁신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디지털시장혁신촉진기금을 설치함 (안 제17조) ⑪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5년마다 디지털시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 (안 제20조) ⑫ 시장지배적 디지털 플랫폼서비스 사업자와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디지털 플랫폼서비스 분쟁조정협의회를 둠 (안 제21조) ⑬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디지털 플랫폼서비스 사업자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안 제29조) ⑭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명령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산정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안 제33조) ⑮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사업자가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사업자는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안 제36조)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등 11인)」 국내 인수·합병의 대다수는 기존 지배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경영권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일반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제도가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는 외국의 경우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수·합병과정에서 일반 소액주주의 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과 대비되어, 국내에도 일반투자자 보호방안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업의 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피인수기업의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투명한 거래를 통해 기업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약탈적 인수·합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되, 기업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인수·합병의 순기능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의무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안 제146조의2 신설) - 의무공개매수를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의 매수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의 청약을 권유하고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밖에서 그 주식을 매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주권상장법인 등의 100분의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당해 매수등 이후 일정 수 이상의 주식을 추가로 의무공개매수하도록 하되,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함 ② 의무공개매수공고 및 신고서 제출 (안 제146조의3 신설) - 의무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의 매수등이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무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 매수할 주식의 발행인, 매수의 목적, 매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 의무공개매수조건 등을 공고하여야 함 ③ 의무공개매수의 철회 (안 제146조의4 신설) - 의무공개매수는 철회할 수 없으나, 대항하는 매수가 있거나 의무공개매수자가 사망·해산·파산한 경우 등은 예외로 철회할 수 있도록 함 ④ 의무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매수 금지 (안 제146조의5 신설) - 의무공개매수자는 선행매수일부터 그 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의무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매수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 ⑤ 의무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안 제146조의6 신설) - 의무공개매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주식을 매수하여야 함 ⑥ 의무공개매수에 따른 의결권 제한 (안 제146조의7 신설) - 선행매수를 한 자가 의무공개매수 공고를 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거짓 표시한 경우 등에는 의결권이 제한됨 ⑦ 의무공개매수에 관한 조사 및 조치 (안 제146조의8 신설) -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정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의무공개매수를 정지 또는 금지할 수 있음	2023-05-30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등 11인)」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기업이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받기 위해서는 손해의 증명과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나,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유용하였는지 여부, 기술 탈취로 인한 피해의 범위 등과 관련된 증거를 수급사업자가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어려운 작업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법 제35조의2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효성 있게 자료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행법 제35조제4항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의 송부 요구는 공정거래 위원회에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지 않음 이에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이미 다양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원이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기업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35조의2 등)	2023-06-01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공공기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유가족이 관련 CCTV 영상의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공공기관은 감사 및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하는 일이 일어나는 등 사고 피해자의 개인정보 열람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범죄 또는 사고의 피해자인 정보주체가 공공기관에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안 제35조제4항)	2023-06-02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의원 등 12인)」 국내 등록된 시각 장애인들은 25만여 명에 이르며, 2017년 금융위원회에서 카드사에 시각 장애인의 금융편의 제고를 위해 점자 카드 발급을 권고한 바 있음	2023-06-02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9개 카드사에 문의한 결과, 대부분의 점자 인쇄가 가능한 카드는 서너 개에 불과하고 이 중 모든 카드에 점자를 각인하는 회사는 단 한 곳뿐이며, 심지어 점자카드를 아예 발급하지 않는 카드사도 있다고 보도한 바 있음 금융위원회의 권고 후 5년이 지나도록 시각장애인들은 여전히 카드 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들이 금융 소비자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각장애인용 점자 카드를 발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14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하도급거래의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는 분쟁조정 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피해업체는 조사 결과 상대방업체가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피해구제를 받으려면 조정 신청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그런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이라도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에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는 각하 대상에서 제외하여 조사가 종료된 후에도 분쟁조정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에서도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에 조정신청을 하면 각하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의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24조의5제3항제3호 등)	2023-06-02
기획재정위원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0인)」 기획재정부는 불공정 하도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09년 국가계약에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사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지위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을 도입하고, 발주기관이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2021년부터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어 전문건설사도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계약예규를 개정하여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을 발주기관이 아닌 입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음	2023-05-30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그런데 해당 제도 시행 이후 입찰자가 주계약자관리방식을 선택하여 입찰한 실적이 미미한 상황이며, 종합·전문 건설사 간 상호시장 개방 이후 규모가 큰 종합건설사의 수주 편중이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종합·전문 건설사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을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이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낙찰자 선정 시 주계약자를 종합건설사업자로, 부계약자를 전문건설사업자로 지정한 공동수급체를 우대할 수 있는 있도록 함으로써 불공정 하도급 해소를 통한 건설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2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의원 등 14인)」 현행법에는 관세청이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장에 부여하는 고유 부호인 통관고유부호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실무적으로 관세청고시인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물품 수출입시 수출입통관업체나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통관고유부호에는 수출입통관업체를 식별하기 위한 “사업자통관고유부호”와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는데,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도용 등 악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특히,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구매 금액이 미화 150달러 (미국에서 구매하는 목록통관품목은 미화 20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하여, 개인이 미화 150달러가 넘는 물품을 구매하면서 관세를 내지 않거나, 수입업자가 마치 개인인 것처럼 꾸며 당국의 허가나 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재발급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통관고유부호라는 용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통관고유부호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관세청장이 통관고유부호의 발급·관리 및 도용 방지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관고유부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2조 및 제254조)	2023-05-30
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현행법에서는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및 예술가 등 지식재산 창출자가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활동하여 우리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2023-05-31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이러한 지식재산 창출은 스포츠 분야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 즉, 전문체육선수들이 훈련하는 과정에서 창조해낸 다른 선수들의 것과 구별되는 그 선수만의 기술, 자세, 전략 등을 데이터로 축적하여 경기력 향상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일반인을 위한 운동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민간시장에서 사업화하여 스포츠산업 및 데이터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음 이에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지식재산 창출자에 체육인을 추가하고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시 지식재산 창출역량 강화방안 수립 범위와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협력 범위에 체육계도 포함하도록 하는 것임 (안 제2조, 제8조, 제34조)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6인)」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대상 시설에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해 12월 기준 전기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38만대로 전기자동차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설치된 충전기 수도 함께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아파트 등 대규모 건물에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다룬 별도의 조항이 없어 화재발생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특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지하주차장 등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시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취약지역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의2제13항 신설)	2023-05-30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양금희의원 등 15인)」 4차 산업혁명과 첨단산업의 등장으로 인하여 기술혁신이 고도화됨에 따라 숙련된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음. 이를 위하여 미국은 2022년 「반도체 지원 및 과학법」을 제정하고 첨단산업 관련 인재육성을 위하여 132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고, EU는 올해 내에 「반도체법」을 제정하고 2억 유로를 지원할 계획임 한편, 우리나라도 급성장하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요에 맞는 양질의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기 매우 곤란한 인력부족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인재는 해외로 유출되는 반면, 우수 해외인재의 유입은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는 실정임	2023-05-31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그런데 첨단산업 기술의 특성상 정형화된 대학교육만으로는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는 반면, 산업계는 국내 투자의 79%, 기술개발 인력의 73%를 점유하는 등 첨단 산업 관련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 변화에 대한 대응속도 및 기술역량 등의 측면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으므로, 대학과 산업계가 함께 인재육성의 핵심축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중·장기적으로는 대학교육의 혁신을 병행하되 시급성이 높은 첨단분야는 산업계가 직접 인재육성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이에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첨단산업 인재육성 정책을 마련하고, 첨단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직접 육성하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기업의 요구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첨단산업의 인재육성을 효율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이 법의 목적을 첨단산업의 우수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함 (안 제1조) ② 첨단산업, 첨단산업 인재혁신, 첨단산업 인재육성, 교육기관등, 해외인재를 정의함 (안 제2조) ③ 첨단산업 인재혁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안 제4조) ④ 첨단산업 인재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등의 심의를 위하여 첨단산업 인재혁신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⑤ 인재혁신사업을 추진하는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첨단산업인력 위기기업종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위기기업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⑥ 산업계의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하여 사내대학원·계약학과등의 설치·운영, 기업인재 개발기관등의 인정 및 인정취소, 특성화대학등·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인재혁신전문기업·전문양성인의 등록, 산업계가 보유한 인재혁신 시설의 개방·공유 및 해당 사업에 대한 사후영향평가 등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11조부터 제23조까지) ⑦ 첨단산업 인재혁신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인재혁신센터의 설치, 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첨단산업 기술인 협회의 설립, 인재혁신협의체의 구성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 ⑧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하여 지역인재 확보, 청년·여성인재의 육성·활용, 중소·중견기업 및 해외인재 유치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내에 해외인재유치센터를 두도록 하며, 규제 개선의 신청 등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32조부터 제45조까지) ⑨ 그 밖에 자료제출, 청문, 권한과 업무의 위임·위탁, 벌칙 등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환경노동 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1년 2월 8일에 발표된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의 노동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무 중 고객으로부터 욕설 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93%에 달하는 등 콜센터 상담사를 비롯한 고객응대근로자는 항시적으로 인간 존엄의 가치와 노동 인격이 파괴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전 국가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도록 하고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로 삼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안 제41조의2 신설)	2023-05-30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달러에 들어섰지만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근로빈곤층 확대 등 극심한 사회적 양극화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대한민국헌법」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누구든지 성별,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 생활 등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제11조), 헌법정신에 따라 모든 국민은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제10조),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32조) 더불어 「대한민국헌법」은 국가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여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음 (제119조 제2항) 특히 최근 대법원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분야에서 근로자를 차별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연공형 임금체계 (호봉제)에서 직무 형태별, 성과 중심의 세대상생형 임금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가치의 존중은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며 노동가치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현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노동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하청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임	2023-05-31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노동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이어야 하며 결코 생존에 수반되는 고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형태에 따라 노동강도 또는 임금에 차별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헌법이 차별금지 및 근로에 대하여 명문화하고 있는 정신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현행 「근로기준법」이 정한 균등 처우의 원칙(제6조)을 보완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추가적으로 금지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원용함으로써, 헌법이 정한 차별금지 및 근로에 대한 가치를 실현하고 나아가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여 경제민주화를 구현하고자 함 (안 제6조제1항 · 제2항 및 안 제6조의2 신설)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폐기물의 처리기준·방법과 재활용 원칙 등에 부합하지 않게 처리된 폐기물 또는 정해진 장소 외의 장소에 버려지거나 매립된 폐기물인 ‘부적정처리폐기물’의 경우 그 처리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처리방법 변경, 반입정지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폐기물 처리책임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그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자, 폐기물의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 등 폐기물의 발생·처분에 책임이 있는 자임.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더불어 ‘그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를 포함하고 있음 토지 소유자는 폐기물의 발생·처분에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임대한 경우 또는 토지의 매매·경매 등으로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로서 그 이전에 이미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등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임 이러한 경우까지 부적정처리폐기물 처리 조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에 현재의 토지 소유자와 함께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당시 토지 소유자였다면 현재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조치명령대상자에 포함하되, 소유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조치명령대상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책임분배의 합리성을 기하고자 함 (안 제48조제1항 등)	2023-06-01
국토교통위원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등 10인)」 건설산업의 높은 산재사고와 만성화된 임금 체불의 핵심 원인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파생하는 낮은 직접 공사비, 건설사 대금 유용 등의 공사비 누수가 지목되어 왔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9년 6월 공공발주자가 임금과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대금지급시스템을 전면 시행하였고 최근에는 민간발주 공사에도 확대 적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 시스템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계좌를 거쳐 지급되는 방식으로 계좌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하여 원천적인 체불방지가 불가능한 구조임	2023-05-31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따라서 보완 방안으로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20년 5월 정부에서는 압류할 수 없는 특수계좌를 통해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직접지급시스템을 시범 도입하여 현재 국가철도공단 등 7개의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바 여타 기관과는 달리 체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등 직접지급의 뚜렷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음 한편 직접지급시스템을 운용하게 되면 더 이상 체불위험 없이 지급보장이 가능하여 지급 보증서가 필요 없게 될 것이나, 현행법에는 체불 상황을 가정한 대금지급보증 제도가 남아 있어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하도급 관리 및 대금지급 시스템을 체불 근절과 공사비 누수 차단이 가능한 규격으로 제도화하고 모든 공공 발주 공사와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공사에 확대·적용하도록 하며, ‘직접지급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의 경우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는 등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설 현장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34조제2항 및 제9항, 제68조의3제2항)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의원 등 13인)」 현재 국가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공사 및 용역에 대해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용역비에 보험료를 계상하고 있음 반면 대형건설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고 피해처리 및 관리능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가 수주하는 중·소규모 건설공사는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 및 가입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이에 중·소규모 공공 건설공사 수행 중 사고에 따른 손해 발생 시, 사업자 및 피해자를 보호하고 보험 제도상에서 나타나는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 (안 제4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2023-06-01

3.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상임위	아래【별첨1】참조		
국회도서관	6/7(수)	금주의 서평 제631호 발간 - 식민지 건축(저자:니시자와 야스히코)	
	6/8(목)	제4차 국가전략 콜로키움 개최 - 인공지능과 디지털 헬스케어	국가전략 정보센터
예산정책처	6/5(월) 10:00	‘물가안정목표제’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의정관 417호
입법조사처	6/5(월)	「NARS 현안분석」 발간 -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과제 :만화웹툰 산업을 중심으로	
미래연구원	6/8(목) 13:30	[국회의원 연구단체-국회미래연구원 공동 포럼] 제2회 한국섬정책포럼 - 섬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국가 균형발전 전략	의원회관 1소회의실

【별첨1】 제407회국회(임사회) 위원회 의사일정(안)

산자중기위	일시	구분	내용
교육위	6/8(목) 11:00	법안심사소위	- 법안 심사
국방위	6/7(수) 10:00	법안심사소위	- 법안 심사
농해수위	6/7(수) 15:00	전체회의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현안질의
정치개혁특위	6/8(목) 14:00	법안심사제1소위	- 법안 심사

4.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6/5(월) 10:00	병원이 아닌 내 집에서 죽을 권리 - 자택 임종·가정 호스피스 제도 확대를 중심으로	김상희·인재근 의원실	의원회관 1간담회실
6/5(월) 10:00	포털 뉴스 서비스의 개혁과 공정성 회복 방안 세미나	윤두현 의원실 국민의힘 포털위원회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6/5(월) 10:30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국제법적 쟁점과 대응과제 긴급토론회	소병훈·이재정 의원실	의원회관 9간담회실
6/5(월) 14:00	2023 세계환경의 날 포럼 - Korea Day 친환경문화 국제교류 활성화전략	지성호·박대수 의원실	국회박물관
6/5(월) 14:00	대학주도 혁신 스타트업 육성 어떻게 할 것인가?	강훈식·김병욱(국) · 김영배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실
6/5(월) 14:00	지방 소멸 대응 및 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충북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이종배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6/5(월) 14:00	청소년 불법도박 :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	정경희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6/7(수) 10:00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창립 4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 한국의 금융 불평등	박용진 의원실,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의원회관 2소회의실
6/7(수) 14:00	합리적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박찬대 의원실	의원회관 5간담회실
6/7(수) 14:00	해양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한 국회포럼	이달곤·서삼석·위성곤 ·윤준병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6/8(목) 10:00	제8차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 한국 부동산, 무엇이 중요한가?	민주당민생경제위대책위	의원회관 2소회의실
6/8(목) 10:00	가사서비스 외국인력 도입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	서영교·서영석 의원실, 한국노총 등	의원회관 8간담회실
6/8(목) 10:00	기부활성화를 위한 세법 개정 정책 토론회	류성걸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6/8(목) 10:00	데이터 분권 토론회 - 데이터 분권 실현을 위한 주제발표 및 토론	황보a권칠승·김두관· 김병기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6/8(목) 10:00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을 위한 대토론회 - 건강한 노조를 위한 첫걸음은 회계투명성	서범수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6/8(목) 10:00	탄소중립시대, 수소환원제철로의 대전환 토론회	김병욱·어기구 의원실, 국회철강포럼 등	의원회관 9간담회실
6/8(목) 14:00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국회토론회	신정훈·윤미향 의원실,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의원회관 8간담회실
6/8(목) 14:00	지하상가에는 지역경제와 문화가 흐른다 : 지하도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이동주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6/8(목) 14:00	한강하구특별법 제정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배준영 의원실	의원회관 6간담회실
6/8(목) 15:00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한국형 탄소 중립도시 정책 심포지엄	한정애 의원실, 국회기후변화포럼	의원회관 1세미나실
6/9(금) 10:00	「도시재생법」 10년, 제도개선 방안과 부산 원도심의 미래	안병길 의원실, 국토연구원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6/9(금) 11:00	혁신 4.0 연구포럼 하계 세미나 1차 강연 - 글로벌 탄소중립 선도를 위한 에너지 혁신 방안 : SMR 을 중심으로	국회 혁신4.0연구포럼	의원회관 2간담회실
6/9(금) 14:00	가뭄 극복, 스마트워터그리드로 해결하자!	김정재·김형동 의원실, 환경·인 포럼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제187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도서관	5/30(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23호 발간 - 프랑스의 이민정책 관련 입법례	
	5/31(수)	금주의 서평 제630호 발간 - 특권 중산층(저자:구해근)	
	5/31(수)	「World&Law」 제2023-11호 발간 - 내 집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을까?	
예산정책처	5/30(화)	「NABO 2022 연차보고서」 발간	
입법조사처	5/30(화)	「외국 입법·정책 분석」 발간 - 2023년 독일 연방선거법 개정 내용과 시사점	
	5/31(수)	「NARS 현안분석」 발간 - 선거제 개편 논의 왜 침체에 부딪혔나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5/30(화) 10:00	<u>모두를 위한 국민연금, 소통과 대안 1차</u> - 분신을 넘어 모두를 위한 국민연금으로	남인순·김성주 의원실. 참여연대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5/30(화) 10:00	<u>통합물관리 시대 가뭄대책 마련 국회 토론회</u>	윤준병 의원실, 한국수자원학회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5/30(화) 14:00	<u>비영리법인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토론회</u> -사회복지법인을 중심으로	최재형 의원실, (사)온울	의원회관 2소회의실
5/31(수) 09:20	<u>국내 유전상담서비스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u>	신현영 의원실, 한국희귀질환재단	의원회관 7간담회실
5/31(수) 10:00	<u>산업단지 집단에너지 탄소중립 저탄소 연료전환 방 향과 분산에너지 역할</u>	김성원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5/31(수) 10:00	<u>순환경제 사회를 위한 자원순환 정책 과제 모색을 위 한 토론회</u>	김영진·윤건영·이학영 의원실, 녹색연합	의원회관 3간담회실
5/31(수) 14:00	<u>대덕특구 50주년 기념 특구 미래정책 국회포럼</u>	조승래·김영식· 김영주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5/31(수) 14:00	<u>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한 국가도로망 디지털트 윈 구축</u>	강대식 의원실, 국토교통부	국회박물관 2층 강당
5/31(수) 14:00	<u>인구 절벽으로 병역자원 부족시대! 대안은? 민간군 사기업!</u>	한기호·이헌승 의원실, 대한민국 국방부 등	국회도서관 강당
6/1(목) 10:00	<u>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 안 긴급간담회</u>	소병훈·이재정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6/1(목) 14:00	<u>M&A 활성화를 위한 국회 정책 세미나</u>	양금희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6/1(목) 15:00	<u>2023 상반기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 정기 콘퍼런스</u> -지식재산(IP) 감정평가 제도 선진화 방안은?	이주환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5. 지난 주(5/29~6/4)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요 뉴스레터 List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	분야	내용
5/30(월)	에너지 · 자원	<u>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확정</u>
5/31(화)	노동	<u>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판결이 연이어 선고되고 있습니다</u>
5/31(화)	노동	<u>월간 노동 뉴스레터</u>
6/1(목)	ESG	<u>ESG 평가기관 가이드스 제정의 주요 내용</u>
6/2(금)	방송통신(TMT)	<u>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침해사고 신고기간을 명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u>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백대용 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김성범 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홍정아 (Claudia Hong) 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안현정 변호사	T. 02-316-1637 E. hjeahn@shinkim.com
• 방세희 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노지은 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성재열 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조성환 변호사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박건백 변호사	T. 02-316-4670 E. gbapark@shinkim.com
• 나인선 변호사	T. 02-316-1795 E. isna@shinkim.com
• 나인경 변호사	T. 02-316-7251 E. ikra@shinkim.com
• 김은혜 변호사	T. 02-316-1736 E. ehkim@shinkim.com
• 서치원 변호사	T. 02-316-7225 E. cwseo@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